

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

議案 番號	1672
----------	------

提案年月日 : 1998. 12. .
提 案 者 : 環境勞動委員長

1. 提案經緯

1998年 12月 23日 第199回國會(臨時會) 第1次委員會에서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整備計劃에 따라 노동부소관 各種 規制를 廢止 또는 緩和하기 위하여 公認勞務士法 등 5개 法律을 一括整備하기로 한 勞動部소관公認勞務士法등의規制廢止등에 관한法律案은 이를 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委員會에서 각 個別法律을 委員會案으로 改正하기로 함

2. 提案理由

最低賃金法에 規定된 使用者의 最低賃金 周知義務 違反 등 輕微한 法違反에 대한 罰金刑을 過怠料로 轉換하기 위한 것임

3. 主要骨子

가. 使用者의 最低賃金 周知義務 違反, 勞動部長官에 대한 報告義務 違反, 書類提出要求 등에 대한 拒否·妨害·忌避 등의

경우 종전에 1백만원 이하의 罰金刑에 처하도록 한 것을
1백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하는 것으로 함(案 第29條,
第31條)

나. 過怠料 賦課에 관한 徵收 方法·節次 등에 관한 事項을
정함(案 第31條)

法律 第 號

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

最低賃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2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26條의2(權限의 委任)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
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委任
할 수 있다.

第29條를 削除한다.

第30條중 “第28條 또는 第29條”를 “第28條”로 “해당條”를 “同條”로
한다.

第31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31條(過怠料)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
過怠料에 處한다.

1.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
2.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者
3.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 또는 檢査를 거부·방해 또
는 기피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勞動部長官이 賦課·徵收한다.

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
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
있다.

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
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
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
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.

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

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.

附 則

①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.

②(罰則에 관한 經過措置)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.

新・舊條文對比表

現 行	改 正 案
<p><新 設></p>	<p>第26條의2(權限의 委任)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 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.</p>
<p>第29條(罰則)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者는 100萬圓이하의 罰 金에 處한다.</p> <p>1.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</p> <p>2.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者</p> <p>3.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 또는 檢査를 거부・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質問에 대하 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</p>	<p><削 除></p>

第30條(兩罰規定) 法人의 代表者
 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·
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
 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
 第28條 또는 第29條의 위반행위
 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
 는외에 그 法人이나 개인에 대
 하여도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
 다.

<新 設>

第30條(兩罰規定) - - - - -
 - - - - -
 - - - - -
 第28條 - - - - -
 - - - - -
 - - - - -
 - - - - 同條 - - - - -
 - .

第31條(過怠料) ①다음 各號의 1에
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
 過怠料에 處한다.
 1.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
 2.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
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
 者
 3.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
 요구 또는 檢査를 거부·방해
 또는 기피하거나 質問에 대하
 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
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
하여 勞動部長官이 賦課·徵收
한다.

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
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
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
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
제기할 수 있다.

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
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
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
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
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
하며,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
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
料의 裁判을 한다.

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
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
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
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
이를 徵收한다.